

「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9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7년 11월 9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남동선)

### 가. 제안이유

- 2017. 7. 26일 「정부조직법」 개정·시행에 따른 주요 정부부처 명칭 변경
  - 부처명칭 변경사항(17. 7.26.)
    - 행정자치부, 국민안전처 → 행정안전부
    - 미래창조과학부 → 과학기술정보통신부
    - 중소기업청 → 중소벤처기업부
-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, 국토해양부 등 명칭이 변경된 지 기간이 경과한 정부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군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변경된 정부부처 명칭 인용 사항 일괄 정비
  - 「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 등 13개 조례, 22건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주요 정부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1부.

##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

제1조(「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4조(「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5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2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3조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3조의2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**제6조(「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 
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행정자치부령”을 “행정안전부령”으로 한다.

**제7조(「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」의 개정)**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**제8조(「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」의 개정)**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국민안전처장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**제9조(「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소방방재청”을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10조(「평창군 건축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전단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(「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